

# 목 차 \_\_\_\_

I . 기	요 및 주요내용	····· 2
Ⅱ. 운	영성과 및 반성	····· 4
Ⅲ. 추?	진목표 및 전략	····· 6
IV. 세	부 추진 계획	8
♡. 중I	대재해예방 투자 계획	····· 14
VI. 행	정사항	····· 15
붙임 1.	.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·보건관리 성과표 1부	
2.	2.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	스트 1부
3.	3.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	스트 1부
4	. 지방공공기관 안전 ·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	

## 1. 개요 및 주요내용

중대재해 및 산업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### □ 관련근거

- ○「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9조
- ○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장 ~ 제5장
- 행정안전부 「**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제6조**

## □ 중대재해 적용범위 : 중대산업재해 + 중대시민재해

- 1 중대산업재해 <u>사망자 1명 이상, 부상자 2명 이상, 직업성 질병자 3명</u> 이상
- ※ (부상) 동일한 사고 ➤ 6개월 이상 치료 / (질병) 동일한 유해요인 ➤ 1년 이내 3명 이상
- ☞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2항,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 제1호
- 2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, 부상자 10명 이상, 질병자 10명 이상
  - \* (부상) 동일한 사고 > 2개월 이상 치료 / (질병) 동일한 원인 > 3개월 이상
- ☞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
- ☞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3항

## □ 보호대상 및 대상시설

구분	보호대상	대상시설
중대산업재해	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	전 사업장
중대시민재해	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	

##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주요내용

#### 1. 중대산업재해 [법 제4조]

-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## 2. 중대시민재해 (법 제9조 2항)

- <u>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</u>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다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## 3. 중대산업·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[제7조, 제10조]

#### 4.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

사 업 주	근 로 자
<ul> <li>・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을 준수</li> <li>・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</li> <li>・산업재해 기록,보존의 의무</li> <li>・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</li> <li>・유해・위험한 장소에 안전・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</li> <li>・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・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・증진</li> <li>・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</li> </ul>	<ul> <li>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.</li> <li>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모,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.</li> </ul>

## Ⅱ. 2023년도 운영성과 및 반성

	운영성과
$\bigcirc$	
$\bigcirc$	
$\bigcirc$	
$\bigcirc$	
$\bigcirc$	
O	
_	
$\circ$	
$\circ$	
$\bigcirc$	
<u> </u>	

## □ 반 성

## ○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(2019~2023년 / 5년)

구분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주차시설	3건	1건	_	1건	1건	_
체육시설	1건	_	_	-	_	1건
공공시설	-	_	_	-	-	-
계	4건	1건	-	1건	1건	1건

## $\subset$

<b>) 산업재해 발생 세부내역 및 재발방지</b>
- 2019년)
· 재해장소 :
·재발방지 :
- 2021년)
、재해장소 :
· 재발방지 :
- 2022년)
、재해장소 :
、재발방지 :
- 2023년)
、재해장소 :
、재밬방지 :

## Ⅲ. 추진 목표

- □ 산업재해 발생 제로(Zero)화
- □ 전 직원 참여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소 80%이상 감소
- □ 안전 보건관리 내실화 및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

비 전

## 구민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파트너

목 표

## 무재해 사업장 달성(산업재해 발생 Zero화)

#### 추진전략

## 추진과제

안전보건 내 실 화

-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
- ◎ 종사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주요 내용 전파
- 안전,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
- ◎ 위험성평가를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마련

관리감독자 역할수행 강 화

- 자율적인 안전·보건경영활동에 관리감독자 적극 참여
- ◎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 함양
- 매월 안전점검 순찰 및 개선방향 검토
-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재해예방 대책 마련

-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화
- 안전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편성, 집행
- ◎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## 안전 보건 경영방침

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재해 및 잠재 위험 요인의 예방과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등 안전·보건활동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·보건 경영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한다.

- 1. 우리 공단은 안전 보건을 경영의 추진과제로 삼는다.
- 2. 안전·보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,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.
- 3.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소를 찾아 예방하고,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한다.
- 4. 무재해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지원한다.
- 5. 전 직원은 참여와 소통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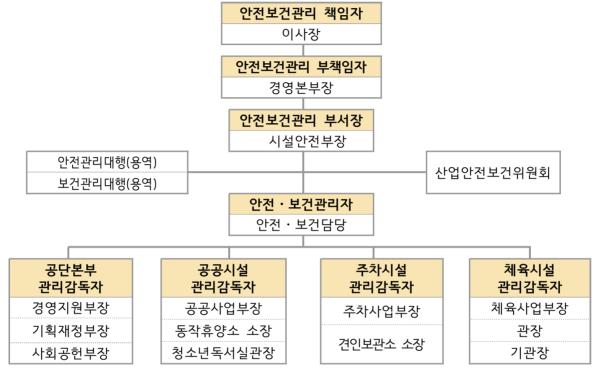
2023 년 3 월

##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친 수

## Ⅳ. 세부추진 계획

## 1 중대산업재해 예방

- □ 산업안전 · 보건관리체계 구축
  -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도



- 임무 및 역할
  - (**안전 · 보건 총괄책임자**) 산업안전 · 보건관리 총괄 책임
  - (**안전 · 보건 부책임자**) 산업안전 · 보건관리 부책임
  - (**안전 · 보건 책임자**) 산업안전 · 보건관리 총괄관리 업무
  - (**안전 · 보건 담당자**) 산업안전 · 보건관련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 · 조언
  - (관리감독자)
    - 1)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    - 2)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,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
    - 3)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
    - 4)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
    - 5)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

#### □ 위험성평가 실시

- 위험성평가 : 년1회
  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

#### ○ 위험성평가 방법

- 사업장별 근로자 참여 자발적 작업장·시설의 유해·위험요인 탐색 → 위험성 결정(가능성, 중대성) →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예방조치

#### ○ 위험성평가 내용

- 안전사고 발생 장소 위험성평가 우선 실시
- 이용객 및 근로자 안전사고 위해요소 사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(개선)
- 사업장 구획(실)별 순회, 교차 점검에 의한 위험성 평가
- 보수작업공정, 작업도구, 유해화학물 취득 등에 따른 위험성 평가
- \* 공단 산업안전 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62조(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)

#### 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
- (**관련근거**) 공단 산업안전 · 보건위원회 운영규정
- **(주요기능)**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, 의결
- (운영방법) 정기회의(분기별 1회) 개최로 재해예방,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
- (위원회 구성)
  - 근로자위원 : 근로자측 대표, 근로자 위원, 명예산업안전감독관
  - 사용자위원 : 사용자대표(이사장), 사용자위원(부장), 안전 보건관리자
  - \* 공단 산업안전 · 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14조(위원회 구성)

#### □ 시설관리자 정기 안전운영 회의

- (주요기능) 실무자 구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안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
- **(운영방법)** 정기회의(반기별 1회) 실무자 재해예방,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
- **(운영구성)** 시설안전부장, 안전담당자, 시설별 담당자

### □ 산업안전·보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

- (**산업안전 · 보건 교육)** 임원, 관리감독자,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
  - 신규채용, 업무 변경 및 위험 작업 시행 시 현장 교육 추가 실시
- 산업안전예방 안전교육[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32조 동 시행규칙 제26조, 29조]

교육명	대상자	교육주최	교육시간(년)
관리책임자교육	이사장	고용노동부 지정	최초 8시간 이상
선덕적급시포퓩	٩٨١٥	교육기관	(1회/3년 보수교육)
경기이건 비견교 Q	7517171	フレコレフト ケフレ	1시간/월(사무직)
정기안전 · 보건교육 	공단 전직원	관리감 <del>독</del> 자	2시간/월(비사무직)
관리감독자	フレコレフト ロフレ	고용노동부 지정	1/1174/13/01174/13)
정기안전교육	관리감 <del>독</del> 자	교육기관	16시간/년(8시간/년) 
신규채용자 교육	신규채용자	산업안전 · 보건담당/ 관리감독자	8시간 이상
직무변경시 교육	직무 변경직원	관리감독자	2시간/월 이상
특별교육	유해ㆍ위험작업	관리감독자	2시간이상(간혈적)

\*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21조 ~ 제24조

### □ 근로자 유소견자 관리

- (근로자 건강검진)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, 보호
- 검진 구분 및 주기, 대상자

구 분		실시주기	대 상 자	검진기관	
배치전 건강진단		배치 및 신규 입사자	특수검진 대상 작업개소 직원 (주차관리원 이간근무자, 기관실근무자)	고 <del>용노동부</del> 지정	
특수건강검진		1회/년 이간근로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(주차관리원 이간근무자, 기관실근무자)		검진기관	
일반 사무직		1회/2년	사무직	국가건강검진	
검진	비사무직	1회/년	특수검진 제외직원	지정병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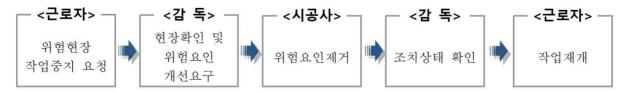
\*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44조, 제45조

#### □ 근로자 및 제3자 도급·용역·위탁 등 수급인, 종사자 보호 대책

- (작업근로자 보호)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
  -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(6개월 미만 근속) 단독 작업 제한
  - 폭염,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옥외 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
- (작업장 시설 안전 조치) 현장 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
  -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, 결과 및 개선 계획 자치단체장에게 보고
  - 현장 근로자 사전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
  -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고기록 보존 의무
  - 도급, 발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점검하여 부실 시 보완 조치 요구
- (**적격수급업체 선정**) 제3자에게 도급,용역,위탁 등 수급인, 종사자 보호
  -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(계약부서)
  - ·(공사) 행안부 예규「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」및 (용역) 서울시「적격심사 세부 기준」개정내용에 따라 실시
  - 수의계약 업체 평가(발주부서/계약부서)
  - ·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 방지토록 안내
  -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(발주부서)
  - ㆍ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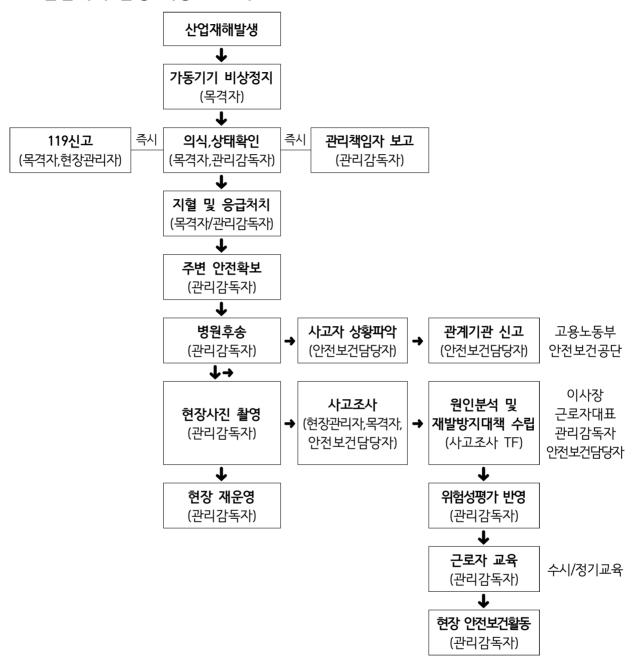
#### □ 작업증지 요청제도 운영

- (작업중지요청)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
- (시행목적) 현장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



## □ 산업재해(급박한 상황포함) 발생 대응 및 조치

○ 산업재해 발생 대응 프로세스



### ○ 재해(사고)조사 절차

- 1) (사실의 확인)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
- 2) (재해요인의 파악) 물적, 인적,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.
- 3) (재해요인의 결정)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, 간접 원인을 결정
- 4) (계획,대책의 수립)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.

### 2 중대시민재해 예방

#### □ 시설관리자 정기 안전운영 회의

- (**주요기능**) 실무자 구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안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
- (운영방법) 정기회의(반기별 1회) 실무자 재해예방,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
- **(운영구성)** 시설안전부장, 안전담당자, 시설별 담당자

#### □ 시설물 안전 점검

○ (정기 점검) "안전점검의 날"(매월 4일) 지정, 사업장별 체크리스트 이용 안전점검

구 분	안전점검 내용	점검자
74 74 1 11 0	전기, 보일러, 냉·난방, 승강기, 소방, 주차관리초소 등	관(소장), 기관장
점검내용	시설 중요 설비 배관 안전점검	시설담당자

#### ○ (합동 정기 점검) CEO와 고객 참여 계절별 안전점검

- (해빙기) 겨울철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
- (풍수해)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
- (동절기) 폭설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
- 정밀안전진단(------ 협조)
  - 수시 및 정기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소 의심 부위의 정확한 분석,판단
  - 필요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의뢰, 정밀진단 실시

## □ 산업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의 관리 및 조치 추진

- 사업장별 산업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
- ○「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」관심 및 홍보 지속
- 위험상황 필요시 긴급 개선조치 시행, 예산확보 대책 강구
- 산업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## □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

- 점 검 일 : 6월/12월(반기별 1회)
- 점 검 자 : 관리감독자
- 주관부서 : ------ 및 해당 주무부서

## Ⅳ. 중대재해예방 투자 계획

	자본전출금	활용	중대재해(	예방	추진	:	-백만원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$\bigcirc$							

## □ 연도별 산업재해 예방 중기 계획

(단위 : 천원)

IL OF TH	연도별 예산		중기계획		
사 업 명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계	_	-	-	-	-
산업안전、보건관리대행	_	-	-	-	-
관리감독자 및 중대재해예방 전문교육	-	-	-	-	-
근로자 일반,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	-	-	-	-	_
근로자 안전보호장비	_	ı	-	1	-
산업안전 진단 용역	_	_	_	-	-
중대재해예방 인증 취득	_	_	-	-	-
응급처치(AED) 물품 유지	_	_	-	_	-

## Ⅵ. <mark>행정사항</mark>

\_\_\_\_\_

- 붙임 1.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·보건관리 성과표 1부
  - 2.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
  - 3.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
  - 4. 지방공공기관 안전 ·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. 끝.